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의 개정사항('24년)을 반영하여, 현재 '임시적 세외수입'으로 규정된 '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등'과 '지난 연도수입'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고자 함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재산매각수입

나.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

다. 보조금 반환수입

라. 기타수입

3.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등

가. 과징금

나. 이행강제금

다. 부담금(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)

라. 변상금

마. 과태료

바. 환수금

사. 범칙금

4. 지난연도수입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지방세외수입의 구분)	제2조의2(지방세외수입의 구분)
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"수수료,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수입을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임시적 세외수입	2. -----
가.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등	가. 재산매각수입
1) 과징금	
2) 이행강제금	
3) 부담금[나목 2)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]	
4) 변상금	
5) 과태료	
6) 환수금	
7) 범칙금	
나. 그 밖의 임시적 세외수입	나.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
1) 재산매각수입	
2)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	
3) 보조금 반환수입	
4) 기타수입	

